

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세칙

제정 2009. 7. 16. 세칙 제 9호
개정 2011. 6. 7. 세칙 제27호
[시행 2012.8.31.] [규정 제137호, 2012.8.31., 타내규개정]
[시행 2014.11.26.] [세칙 제63호, 2014.11.26., 일부개정]
[시행 2015.6.25.] [세칙 제66호, 2015.6.25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」(이하 “관리규정”이라 한다) 제4장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와 관련된 세부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에 관한 업무는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세칙에 따른다.

제3조(일반원칙) ① 재산조사는 공공기관(행정자치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)으로부터 수집한 공공정보(주민등록 전산정보, 부동산 지적 전산정보, 직장정보 등)를 활용하여 신용지원부에서 실시한다. <개정 2012.8.31>

② 채무자의 발견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상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구분별한 채권보전조치를 지양한다.

③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내용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후의 변동내용 또한 지속적으로 전산으로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권리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
제4조(재산조사 대상자) 재산조사는 피보증인, 공동피보증인, 채무인수인, 상속에 의해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.

제5조(공공정보 수집) ① 신용지원부는 공공정보 수집을 위해 구상권 채무자 명세(주민등록번호, 성명, 고객번호, 구상권잔액, 대출일자 또는 보증채무 이행일자 등)를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8.31>

② 신용지원부는 구상채무자 명세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개인정보의 제공·활용 동의서 등 공공정보수집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8.31>

③ 수집한 공공정보는 채무자별로 전산으로 관리한다.

제6조(공공정보 보안) 신용지원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집된 공공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, 채무가 소멸된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는 폐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. <개정 2012.8.31>

제7조(재산조사 방법) ① 신용지원부는 수집한 공공정보에 의해 확인된 부동산과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한다. 다만, 지적 전산정보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 지상건물에 대한 재산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8.31>

② 지적정보에 의한 부동산은 신용지원부가 물건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등을 확인한다. <개정 2012.8.31>

③ 임금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준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신용지원부가 소득규모를 파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8.31>

제8조(채권보전조치) ① 제7조에 따라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신용지원부는 예상구상실익을 판단 후 채권보전조치를 하되, 구상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2.8.31>

② 피보전채권액은 채무전액을 대상으로 하되, 가압류 등의 청구금액은 물건의 시가, 선순위채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.

③ 임금채권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채권보전조치를 한다. <개정 2015.6.25>

1.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전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(이하 “월급여”라 한다) 150만원 이하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음
2. 월급여 150만원 초과 ~ 300만원 이하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3. 월급여 300만원 초과 ~ 600만원 이하는 급여액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. 월급여 600만원 초과는 급여액에서 산식[300만원+(급여×1/2-300만원)×1/2]의 금액을 뺀 금액

④ 퇴직금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/2을 한도로 채권보전조치를 한다.

제9조(담보공탁)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경우 공탁물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법원의 명령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채권보전조치의 해제 등) 신용지원부는 채무자로부터 채권보전조치 해제 및 법적절차의 보류(취하 포함) 신청을 받을 경우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채권보전조치의 해제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8.31, 2014.11.26>

제11조(소요비용) ① 재산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각종 공부열람, 등·초본 발급에 따른 증지대, 법무사 보수(출장비 포함) 및 기타비용은 손실금(구상채권 : 등기소송비, 특수채권 : 잡지출)으로 처리하고 직원의 출장여비는 손실금(국내여비)으로 처리하되 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.

②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지출한 인지대, 등록세, 송달료, 법무사 보수 및 기타비용의 처리는 구상채권은 대지급금으로, 특수채권은 손실금(잡지출)으로 처리하고 채무관계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채권보전조치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손실로 처리하되 채무관계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1.26>

③ 제2항 단서의 경우가 채권보전조치의 처리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그에게 변상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11.26>

부칙 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(개정)

이 세칙은 201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정 제137호, 2012.8.31> (직제규정)

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

제4조(다른 내규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
⑯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,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8조제1항, 제10조 중 “상환관리부”를 각각 “신용지원부”로 한다.

⑰부터 ㉑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 <세칙 제63호, 2014.11.26>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세칙 제66호, 2015.6.25>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